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제107차 이사회 의사록

회의 소집 통보일자	2019년 4월17일		
이사정수	15	재적이사	15

1.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13:00 -14:00
2.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3. 참석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이사	12	이계엽, 김진수, 김풍기, 정재천 방두성, 송희연, 이봉춘, 홍승기, 조창희, 최방길, 성찬용, 장대진.	
불참이사	3	김영춘, 전종윤, 이한규,	

4. 보고사항

- 제1호 전 회의록 결과보고
- 제2호 학교법인 주요업무보고
- 제3호 금강대학교 주요업무보고

5. 심의안건

- 제1호 2018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안)
- 제2호 2018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결산(안)
- 제3호 2019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안)
- 제4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변경(안)
- 제5호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제정(안)
- 제6호 금강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처분 제청(안)
- 제7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 사임(안)

송희연	송희연	성찬용	성찬용	이대호	이대호
-----	-----	-----	-----	-----	-----

6. 회의내용(회의록 별첨)

- 의결내용

별첨의 회의록 요지 내용과 같이 의결하다.

위 사실을 확인함.

2019년 4월 25일

이 사 장	김영춘		
이 사	전종윤	이 사	송희연 송희연
이 사	이계엽 이계엽	이 사	홍승기 홍승기
이 사	김진수 김진수	이 사	이봉춘 이봉춘
이 사	김풍기 김풍기	이 사	조창희 조창희
이 사	이한규	이 사	최방길 최방길
이 사	정재천 정재천	이 사	성찬용 성찬용
이 사	방두성 방두성	이 사	장대진 장대진
		감 사	인형무
		감 사	이대호 이대호

위 사본은 원본과 같음을 확인 함.

2019년 4월 25일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

[제107차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요지]

1. 일 시 : 2019년 4월 25일(목) 13:00-14:00

2. 장 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3. 참 석 : <참석이사> 12명

이계엽, 김진수, 김풍기, 정재천
방두성, 송희연, 이봉춘, 홍승기,
조창희, 최방길, 성찬용, 장대진

<참석감사> 1명 이대호

<불참이사> 3명 김영춘, 전종윤, 이한규,

<불참감사> 1명 인형무

<참석 교직원 및 보고인> 4명

정응화 법인사무처장, 이승남 교학지원처장,
신동호 기획관리부처장, 박연석 법인팀장,

이사정수 15명 중 12명의 이사가 참석하였으므로 본 법인 정관 제28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선포하고 제107차 이사회의를 개최하였다.

4. 보고사항

- 제1호 전 회의록 결과보고
- 제2호 학교법인 주요업무보고
- 제3호 금강대학교 주요업무보고

5. 심의안건

- 제1호 2018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안)
- 제2호 2018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결산(안)
- 제3호 2019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추가경정예산(안)
- 제4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변경(안)
- 제5호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제정(안)
- 제6호 금강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처분 제청(안)
- 제7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 사임(안)

송희연	송희연	성찬용	성찬용	이대호	이대호
-----	-----	-----	-----	-----	-----

6. 회의내용

제107차 학교법인 이사회회가 2019년 4월25일 목요일 김영춘 이사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금강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김영춘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장 직무대행 이계엽 이사를 포함한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계엽 이사장직무대행은 재적이사 15명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므로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함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위 4번의 ① 보고사항을 마치고 본 회의 의안인 위 5번의 심의안건을 다룬 후 위 4번의 ②와 ③의 보고사항을 접수 한 후 회의를 마쳤다.

7. 의결내용

<제1호> 2018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안)

이대호 감사의 내부감사 결과보고와 신동호 기획관리부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11,050,877천원을 2018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안)을 통과하였다.

<제2호> 2018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결산(안)

이대호 감사의 내부감사 결과보고와 정응화 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7,872,069천원을 2018학년도 학교법인 결산(안)을 통과하였다

<제3호> 2019학년도 학교법인 추가경정예산(안)

정응화 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참석이사의 전원의 찬성으로 2019학년도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1차 추가경정예산(안) 7,349,659천원을 통과하였다.

<제4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변경(안)

정응화 법인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송희연	송희연	성찬용	성찬용	이대호	이대호
-----	-----	-----	-----	-----	-----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71조(징계 및 재심절차)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대학의 직원징계위원회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71조 ①항)

<제5호> 금강대학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제정(안)

정응화 법인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제정 : 2019.04.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71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및 금강대학교의 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한 일반직원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재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심위원회의 구성) 재심위원회의 조직은 법인정관 제54조 ③항과 ④항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에 징계처분 사본 1부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및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청구인
4.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송희연 송희연	성찬용 성찬용	이대호 이대호
---------	---------	---------

- 5.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
- 6. 재심청구의 취지
- 7.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6조(재심위원회의 심사) ①재심위원회는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출하여 이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 관계관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해서만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청구인의 진술권)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할 수 없는 재심청구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진술 조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심청구인의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재심청구의 취하)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건의 심사, 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위원회의 결정) ①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송희연	송희연	성찬용	성찬용	이대호	이대호
-----	-----	-----	-----	-----	-----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 재심청구가 부적합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당해 징계 처분을 파기하여 환송결정을 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재심위원회는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게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②항의 각호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기타처분이 확정 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종전의 징계처분으로 한다.

제12조(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와 개요
4. 증거와 판단

제13조(재심심사결정서의 송부) ①재심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 심사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본 위원회의 과실 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재심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재심결정의 효력)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15조(위원수당 등)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송희연	송희연	성한용	성한용	이대호	이대호
-----	-----	-----	-----	-----	-----

제16조(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7조(운영세칙)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호> 금강대학교 일반직원 징계처분 제청(안)

신동호 금강대학교 기획관리부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최초임용일	징계처분 제청	이사회 의결	일자	비고
유00	85.12.21	학생 지원팀	일반직 7급	2010.12.01	해임	해임	2019.4.25	
온00	74.07.09	창업 보육센터	일반직 6급	2016.02.01	파면	파면	2019.4.25	
가00	69.10.20	원각 도서관	일반직 4급	2002.05.04	해임	해임	2019.4.25	
김00	72.09.07	시설 관리팀	기능직 7급	2015.04.20	해임	해임	2019.4.25	
권00	75.06.30	기획 조정팀	일반직 6급	2004.05.10	해임	해임	2019.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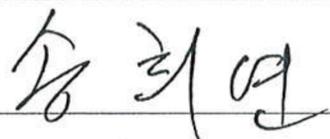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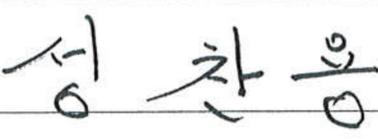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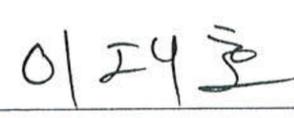
<제7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 사임(안) 심의

정응화 법인사무처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성명	생년월일	직위	임기	사직서 제출일	비고
이한규 (법명 : 월장)	1959.07.03	이사	2018.06.14 ~ 2019.07.15	2019.04.13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건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송희연 이사, 성찬용 이사, 인형무 감사를 선임하였다. 끝.

송희연		성찬용		이대호	
-----	---	-----	--	-----	---